

하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104
----------	------

제출연월일 : 2020. 8. .

제출자 : 하남시장

□ 제안이유

-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관리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 (3년)
- 위탁예산 : 무상
 - 게시 수수료의 일부를 관리비로 함(2019년 139,584천원)
- 대상시설 : 현수막게시대 58개소 80개, 벽보게시판 34개소
- 현재 위탁단체 : 하남시옥외광고협회(회장 유진천)
 - 위탁기간 : 2018. 4. 7. ~ 2020. 12. 31.(2년 8개월 간)

□ 세부 추진계획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심사방법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 위탁사무 수행 인력·시설·장비, 재정부담 능력, 전문성확보, 책임능력, 사무처리 실적, 위탁사무의 연관성 등의 항목에 대해 심사

□ 향후 추진계획

- 2020. 11월 : 모집 공고(신청 접수)
- 2020. 11월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 2020. 12월 : 위수탁 협약 체결, 민간위탁 실시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주관부서 검토의견

- 현수막(벽보) 지정게시시설은 1999년부터 하남시 옥외광고협회가 3년 단위로 수탁 관리해온 시설로서, 현수막(벽보) 신청 접수, 계침, 철거, 사후관리 등 2019년 기준 13,078건의 신청 접수 및 그에 따른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진 바,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재정부담 능력, 전문성확보, 사무처리 실적, 위탁사무의 연관성 등을 심사하여 적격 수탁단체를 선정해 위탁하고자 함.

□ 참고자료

-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위탁관리 계획

<관계법규>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12조제3항제8호에 따른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8.1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적격자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3.9.>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민간위탁 선정을 위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0.3.9.>

제2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 동의 등)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5.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6.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하남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탁사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원만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